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
신설〉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2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 신설 (안 제27조의 2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8. 6.

다. 회 부 일 : 2025. 8. 7.

II. 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 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공정개선·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기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세 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7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 신설 (안 제27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u>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제27조의2)</u>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특정 국가의 저가 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 및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원자재, 부품, 소재의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 2. 제22조에 따른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완 조치 3.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및 설비 재편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제2항) 1.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부품·설비 구매 비용 2. 생산공정 개선, 기술도입 및 설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 3. 생산 품목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인증 등 관련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안보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조세당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개정안은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해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및 설비 재편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직접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은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함)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품목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정된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이고, 경제안보서비스는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지정된 것임.¹⁾

지원방안에는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제22조), 국내외 생산기반

1)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경제안보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5. “경제안보서비스”란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지원(제23조), 기술개발 지원(제24조) 등이 포함됨.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지원방안]

구 분	지원내용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제22조)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음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개량 5. 수출제한 조치 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품목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제23조)	-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음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기술개발 지원 (제24조)	-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사용의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음 1. 연구개발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 분	지원내용
	-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음 - 경제안보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 지원(제25조)	-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음 1.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음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제26조)	-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음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지원 특례(제27조)	-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해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음 -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국내외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부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 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①원자재, 부품, 소재의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 ②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완 조치, ③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및 설비 재편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수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7조의2제2항에서는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음.²⁾

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 개정안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또한,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다면, 실제 세액공제 지원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구체화될 것임. 그런데 지원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가 동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액공

-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대상 비용의 범위와 상충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지원내용이 법 제27조의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지원 특례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 제27조제1항은 안정화 선도사업자³⁾가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또한, 동조 제3항에서도 경제안보품목등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3)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함.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안정화 계획이 기본계획 및 소관 경제안보품목등의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을 준수하고,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담합 가능성, 경제력 집중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화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안정화 계획에 포함될 사항,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안정화 계획의 적정성·재무 여건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기간과 그 밖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급망안정화법」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거나 낮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수단은 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부는 이미 현행 법률에 따라서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해 물류비 지원, 생산기반 확대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27조의2는 지원대상이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현행법 제27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2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거나 낮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국내외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3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 확충의 시급성·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 및 설비구축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기지 신설·증설·현대화의 시급성·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 5)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구체적인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7조의2(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①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특정 국가의 저가 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 및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자재, 부품, 소재의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 2. 제22조에 따른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완 조치 3.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및 설비 재편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제지원의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부품·설비 구매 비용 2. 생산공정 개선, 기술도입 및 설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 3. 생산 품목의 품질·안전성 확보

	<u>를 위한 시험·평가·인증 등 관련 비용</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안보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u> <u>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조세당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문 의 처

02)6788-5155